

##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'99. 7. 6.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의안 번호	132
----------	-----

### 제안이유

-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를 중·고등학생까지로 하여 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하여 유능한 인재 양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주요골자

- 제7조 제1항중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서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까지 포함시켜 개정하고자 함.

### 첨 부

-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- 신구조문 대비표 1부

##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장학금 지급대상)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충청북도 도민의 자녀로서 중·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신입생 포함)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 정 안
제7조(장학금 지급대상) ①장학금의 지급 대상은 충청북도 도민의 자녀로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신입생 포함)으로 한다.	제7조(장학금지급대상)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충청북도 도민의 자녀로서 중·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신입생 포함)으로 한다